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이용 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까지로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3. 장기요양등급 갱신 후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이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갱신된 유효기간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
4.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 한다.
5.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이용시간 또는 일수가 변경된 경우(일회성 또는 일시적으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는 제외) 재계약 또는 장기요양급여 변경 사유서를 작성한다.
6. 기관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내하여야 한다.
7. 기관은 위 항에 따라 재계약 또는 변경 사유서 작성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문자 등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전달 후 7일이내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의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이 정한다.
2.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요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5.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기관에서 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 나. 이용자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및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 다.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 라.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마.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바.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주 보호자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 아.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시설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이용료 등 납부방법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의 수납기간은 기관에서 정한 일자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3.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한 경우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변경절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해야한다.
2. 요양급여수가 또는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필요시 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주야간보호센터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 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세부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 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등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관리	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 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슴기, 네브라이저 제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봉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통증간호	온·냉습포 제공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찰, 장루간호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센터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시 부족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세라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기타서비스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치매 관리 지원	배회·불결행위·폭력행위·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연습 등		

비용의 부담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이용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기관에서 먼저 지불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비용과 서비스 절차

1. 이용자 중 다음 각 항과 같은 특별보호 대상자가 발생 시 실시한다.
2. 이용자의 갑작스런 신체, 정신적 건강(감염, 사망, 위험 등)변화로 인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 할 경우에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을 통해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